

레드리본 에이즈 상담실

Q | 감염인과의 일상생활에서 감염가능성이 있나요 ?

심심식시 시간에 감염인이 마시고 감에 남겨 놓은 물을 제가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 당시 제 입에는 상처가 있었구요. 출혈이 있구요. 분명 컵에는 그사람 타액이 들어갔을테고 저는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요. 넘 걱정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을까요?

A |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 전파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감염인과의 성관계, 감염인의 피를 수혈, 감염된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 감염된 모세로 부터 수직감염입니다. 님께서도 알고 있듯이 피와 정액, 질분비액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외 눈물, 콧물, 침, 소변, 내뼌, 땀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님께서 실문하신 내용 중 감염인이 사용한 컵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염인이 사용한 컵을 사용하더라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안안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액/침으로는 감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감염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Q u e s t i o n

Q | 헌혈을 자주 하는데, 만일 감염인이 된 경우

저는 피어싱을 많이 해서 에이즈 위험에 노출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혈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에이즈감염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심복기때 숙 에이즈 감염지후 헌혈을 하게 되면 음성 판정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채혈한 피를 3개월 후에 검사도 하면 에이즈양성 판정이 나오나요? 만약에 제가 에이즈감염아줄 모르고 남에게 헌혈되었다' 생각하면 정말 이 찝합니다. 저는 남을 위해 헌혈을 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지다면 무섭습니다. 헌혈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 헌혈한 혈액은 일단 에이즈 검사와 기타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에이즈에 감염되면 12주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이때 검사에 사용되는 혈액은 인체에서 바로 채혈한 혈액입니다.

이전에 채혈한 혈액이 아닙니다. 즉, 미리 채혈한 혈액은 3개월 후에 검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혈한 혈액은 일단 에이즈 검사(항원과 항체 검사)와 기타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혹시나 에이즈나 다른 기타질병에 노출된 혈액이라면 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혈에 의한 사고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혈을 하게 되면 에이즈 검사가 실시되지만,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에이즈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서 헌혈은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피어싱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님이 에이즈 감염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을 해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본 협회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고,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Q | 감염인데, 의료보험 급여 2종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염사실을 안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저는 현재 학생이기에 직장?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감염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나와서 저 혼자 서울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은 아버지 직장보험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모르시다는 조건하에 제가 의료보험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보건소와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져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문의하신 의료보호2종(차상위)에 관한 설명을 드린다면 자취를 하고 계시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건 관계없이 부모님의 재산소외가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기본재산이 4천~5천이상이면 의료보호 1종이나 2종이나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등록비를 누가 조달하느냐와 관계있는 문제로서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 담당의 현조업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히 본인의 독립세대 분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보건소와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져 급여2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는 부모님의 재산소외 및 현재 경제적인 부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법의 강화에 따라 꿈꿈이 확인하는것이 보통 동사무소사회복지사들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복지사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고 드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의 기본급과 있으면 투약 및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악화로 정기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면 무세는 달리지겠지만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의료보호 2종은 생각하시고 계신것은 향후 취업에 막대한 시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통보기 될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므로 잠시 침착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감염인들이 겪게 되는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므로 보건담당과 긴밀한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A n s w e r

Q |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무배당 닥터케어건강보험(메리츠화재)과 무배당 퍼스케어 의료보험(한(에이스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은 입원했을 때 의료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 보장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있는데(상세물명의 성행위로 선포되는 질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주로 성행위로 지파되는 기디 질환)에이즈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의 두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감염자들은 2차 증세로 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경우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약관상 에이즈가 면책질환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메리츠 화재보험과 에이스보험에 확인 결과 무배당 닥터케어와 의료보험의 경우 위에 니알하셨듯이 "상세물명의 성행위로 선포되는 질병 등 기타질환"에 있어서 보상유무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이즈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메리츠나 에이스 보험 역시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에이즈가 면책질환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에이즈는 상관계호만 지파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면책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에이즈환자는 입원한 첫날부터 병원에서 내신 병원비 직액 다 보상되면서 입원비까지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원을 3일 이상 하지 않는다 해도 불입한 보험료는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